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

□ 과 제 명: 산업혁신운동 (진공밸브 생산성 향상)

□ 과제기간 : 2016년 10월 05일부터 ~ 2017년 01월 24일까지

□ 계약당사자

- 위탁기업: 삼성전자주식회사 (이하 "전자")

- 수탁기업 : 원익아이피에스 (이하 "1차 협력사")

주식회사에스알티 (이하 "2차 협력사")

□ 과제의 목표

제안 사항	과제의 목표	
직무능력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인당생산대수 2.0개 → 2.3개	
검사시스템 구축하여 불량율 개선	User불량율 2.35% → 0.28%	

□ 공동노력 : 위탁.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전자	· 컨설턴트 지원, 과제발굴 · 아이디어 제공 · 과제관리 및 지도, 현장점검	(주)에이앤시 정창순 위원
1차 협력사	· 과제관리 및 지도, 현장점검 (1차 협력사 별도 역할이 없을 경우 생략)	염병호 부장
2차 협력사	·과제수행	임범빈 부장

□ 성과의 공유

1.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수탁기업에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성과 귀속 동반성장을 위해 2차 협력사에게 과제의 성과를 귀속한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 "성과공유제 세부약정"에 의한다.

별첨 "성과공유제 세부약정"

위와 같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를 3부 작성하여 전자,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10월 04일

"전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매탄동) 대표이사 권 오 현 (인)

"1차 협력사" 원익아이피에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원산단로 75 대표이사 변 정 우

"2차 협력사" 주식회사에스알티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 4길 9-16 대표이사 손 영 만

성과공유제 세부약정

제 1 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전자가 1,2차 협력사(이하 통칭하여 "협력사"라고 칭함)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차 협력사를 지원하고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성과 공유 등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권리와 의무(공동의 노력)

- ① 전자는 본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컨설턴트 등 전문인력, 컨설팅 비용 또는 생산설비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전자의 지급 기준을 따른다.
- ② 협력사는 과제 수행에 있어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와 실행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③ 전자는 협력사에게 공동과제 진행현황 점검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3 조 과제 수행기간

본 과제의 수행기간은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되, 기간 만료 15일 이전까지 상호 합의에 의해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각 당사자의 역할 등

성과공유에 필요한 과제 목표, 일정 등 성과 공유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성과 공유제 표준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며, 구체적인 성과 공유기준 등은 추후 전자 와 협력사 간 합의에 의해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제 5 조 지식재산권

① 본 과제 수행으로 발생하는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하, "공동 지식재산권"이라 칭함)은 원칙적으로 전자와 2차 협력사간 공동소유로 하고 구체적인 지분 비율은 상호 합의로 정하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비율

로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1차 협력사의 기여도가 상당히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전자와 협력사간 지분 비율에 관하여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 ② 본 약정과 관련하여 2차 협력사가 단독으로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자는 2차 협력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이를 사용할수 있다.
- ③ 국내/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전자와 2차 협력사 공동명의로 하고 출원 등 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전자와 2차 협력사 공동으로 부담한다.
- ④ 2차 협력사가 본 약정의 수행으로 발생되는 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제품을 상품화하는 경우, 전자 또는 전자가 지정하는 1차 협력사 이외의 제3자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해서는 안 되며, 그 기간은 전자와 협력사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전자가 2차 협력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 또는 사전에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2차 협력사는 과제 수행 결과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전자와 2차 협력사는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와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6 조 비밀유지

전자와 협력사는 과제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 약정 체결 내용 및 사항 등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전자와 협력사는 사전 동의 없이 본 약정의 이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열람 또는 유출하여서도 아니 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성과공유 확인을 요청하여 성과공유제종합관리시스템 에 과제 내용을 입력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 7 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전자와 협력사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법원의 명령 등과 같이 각 당사자의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8 조 약정의 해지 등

- ① 전자 또는 협력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없이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1.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
- 2. 영업정지 또는 영업면허, 영업등록 등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
- 3. 파산절차,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
- 4.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조세 기타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당하여 본 약정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전자 또는 협력사가 본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상대방은 14일의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약정의 이행을 최고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③ 전자는 협력사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1. 협력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2. 협력사에게 중대한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본 약정 수행 중에 뇌물수수 등과 같이 협력사 직원의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4. 협력사가 약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전자의 요구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 9 조 손해 배상

전자 또는 협력사가 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전자 또는 협력사는 이를 모두 배상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0 조 관할 법원

본 약정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 11 조 기타 사항

- ① 본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본 약정의 내용 중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전자와 협력사 간 합의로써 해결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따른다.
- ② 본 약정 내용은 전자와 협력사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5조 및 제6조는 본 약정의 기간 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더라도 계속 유효하다.

